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488호 2015. 7. 1.(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5-69호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2
 거창군 고시 제2015-80호 거창군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고시.....6
 거창군 고시 제2015-81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83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10
 거창군 고시 제2015-82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12
 거창군 고시 제2015-8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14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5-608호 거창군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15
 거창군 공고 제2015-614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16

회 말									
--------	--	--	--	--	--	--	--	--	--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08-15호(2008.03.13.)로 최초 실시계획인가된 거창군계획시설(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합니다.

2015. 06. 25.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 명칭 :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일명:감악산골프장)

다. 사업의면적 : 1,843,303㎡(회원제18홀, 대중제9홀)

○ 토지이용계획계획

합 계	소계/(구분)	체육시설	건축시설	공공시설	녹 지
1,843,303㎡	1,231,869㎡/(18홀)	283,736㎡	12,470㎡	73,001㎡	862,662㎡
	611,434㎡/(9홀)	144,125㎡	330㎡	25,572㎡	441,407㎡

○ 건축계획 : 건축연면적 11,503.10㎡, 클럽하우스 외 3동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A동

○ 성 명 : 에이치피디엠씨(주) 대표 김성수 (구 장영건설산업(주))

마. 사업기간 : 2008. 3. 13 ~ 2015. 3. 12

바. 취소 또는 폐지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참조

2. 취소 사유

법적 근거	취소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제15의2호 및 제16호	▪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미예치 ▪ 2차례 인가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인가 기간 동안 사업미완료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 또는 폐지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14필지		2,669,183	1,843,303					
1	신원면 덕산리	231	답	255	255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 치피 디엠 씨주 식회 사	근 저 당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지 상 권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2	신원면 덕산리	255	임	205	205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 치피 디엠 씨주 식회 사	근 저 당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지 상 권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3	신원면 덕산리	256	임	89	89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 치피 디엠 씨주 식회 사	근 저 당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지 상 권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4	신원면 덕산리	257	임	89	89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 치피 디엠 씨주 식회 사	근 저 당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지 상 권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5	신원면 덕산리	374	답	2,172	2,17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 치피 디엠 씨주 식회 사	근 저 당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지 상 권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6	신원면 덕산리	377	임	89	89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 치피 디엠 씨주 식회 사	근 저 당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지 상 권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7	신원면 덕산리	378	답	873	87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436-58, 에이동	에이 치피 디엠 씨주 식회 사	근 저 당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 은행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은행 유한회사소울파 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8	신원면 덕산리	379	답	231	23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약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 씨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 은행 유한회사소울파 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9	신원면 덕산리	380	답	423	42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약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 씨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 은행 유한회사소울파 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10	신원면 덕산리	391	답	833	83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약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 씨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 은행 유한회사소울파 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11	신원면 덕산리	440	임	1,236	1,236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약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 씨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 은행 유한회사소울파 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12	신원면 덕산리	산13	임	2,656,341	1,830,46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약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 씨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 은행 유한회사소울파 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13	신원면 덕산리	산52	임	4,165	4,16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14	수원백씨농계 공파종중 (대표자:백정석)			
14	신원면 덕산리	산59	임	2,182	2,18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약산로 436-58, 에이동	에이치피디엠 씨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계룡새마을금고 주식회사참저축 은행 유한회사소울파 트너스	
								지상권	주식회사오닉스 파트너스	

거창군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07월 01일

거창군수

1. 고시명 : 거창군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목 적 :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3. 내 용
 - 가. 금연구역 지정 : 관내 지정문화재 30개소(붙임 1 참조)
 - 나. 금연구역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10만원(붙임2 참조)
4. 고시방법 : 거창군청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055)940-34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현황 1부.
2. 주요 개정 문화재 보호법령 1부. 끝.

【붙임1】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현황

연번	지정별	문화재명	소재지	금연구역
1	보물 1690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거창읍 하동 4길 77	심우사 경내 (843m ²)
2	보물 1700	거창 고건사 동종	가조면 의상봉길 1049	고건사 경내 (6,350m ²)
3	천연기념물 433	거창 당산리 당송	위천면 당산리 331	보호책 내 (1,400m ²)
4	기념물 124	거창 연수사 은행나무	남상면 무촌리 산 312	연수사 경내 보호책 내 (1,783.5m ²)
5	기념물 197	거창 원천느티나무	가조면 장기리 772-1	보호책 내 (296m ²)
6	기념물 198	거창 무촌리 은행나무	남상면 무촌리 1344-38	데크시설 (111.3m ²)
7	문화재자료 126	김숙자사당	남상면 대산리 356	지정구역 (1,114.54 m ²)
8	문화재자료 155	삼우당	남하면 대야리 1456	지정구역 (1,719m ²)
9	문화재자료 191	오례사	신원면 덕산리 1062	지정구역 (857.1m ²)
10	문화재자료 231	성암사	주상면 연교리 341	지정구역 (507.3m ²)
11	문화재자료 232	반구헌	위천면 강천리 51	지정구역 (1,164m ²)
12	문화재자료 251	원천정	가조면 장기리 778-1	지정구역 (1,437.5 m ²)
13	문화재자료 252	서간소루	북상면 갈계리 1166	지정구역 (720.7m ²)
14	문화재자료 253	용암정	북상면 갈계리 63	지정구역 (73.4m ²) 정자
15	문화재자료 346	모현정	가조면 도리 58	지정구역 (84.8m ²)

연번	지정별	문화재명	소재지	금연구역
16	문화재자료 413	거창 양지리 인풍정	신원면 양지리 303-1	지정구역 (1,322.1 m ²)
17	문화재자료 434	거창 갈계리 은진임씨 정려각	북상면 갈계리 1444-1	지정구역 (242.8m ²)
18	문화재자료 457	건계정	거창읍 상림리 745	지정구역 (377m ²)
19	문화재자료 536	거창 동변리 망월정	거창읍 동변 1길 38-46	지정구역 (860m ²)
20	문화재자료 57	포총사	웅양면 노현리 183-2	지정구역 (4,046m ²)
21	문화재자료 58	심소정	남하면 양항리 958	지정구역 (1,110m ²) 관리사 제외
22	문화재자료 77	창총사	거창읍 대동리 142-3	지정구역 (1,486.6 m ²)
23	문화재자료 78	일원정	남상면 전척리 530	지정구역 (591.4m ²)
24	유형문화재 230	거창향교	거창읍 가지리 348	지정구역 (3,767.8 m ²)
25	유형문화재 295	갈천서당	북상면 갈계리 1073	지정구역 (898m ²)
26	유형문화재 307	모리재	북상면 농산리 673	지정구역 (2,038.6 m ²)
27	유형문화재 326	윤경남선생생가	남하면 양항리 573-1	지정구역 (1,539.2 m ²)
28	유형문화재 370	거창 만월당	북상면 농산리 314	지정구역 (1,104m ²)
29	유형문화재 422	거창 구연서원 관수루	위천면 황산리 789	지정구역 (90.2m ²)
30	유형문화재 423	거창 요수정	위천면 황산리 766	지정구역 (79m ²)

【붙임2】

주요 개정 문화재보호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6>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2014.5.28>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⑤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3

가. 법 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170만원), 2차위반(330만원), 3차위반(500만원)

나. 법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차위반(10만원), 2차위반(10만원), 3차위반(10만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법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연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83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78-103호(1978.04.20.)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8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5. 07. 02.

거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비 고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교통 시설: 도로	군계획시설(소로2-83호선)사업	거창	중앙	소로	2	83	48	8.0	거창읍 중앙리 2-6 ~ 거창읍 중앙리 5-3	경고103호 ('78.4.20)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 진 산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1길 81, 102호(지엔지시티)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15. 7.
- 준공 예정일 : 2016. 6.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7,381	413					
1	거창읍 중앙리	5-3	답	120	7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7길13, 라동 202호(무지개아파트)	이진산	근저당권자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자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2	거창읍 중앙리	5-2	답	109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7길13, 라동 202호(무지개아파트)	이상조	근저당권자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지상권자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3	거창읍 중앙리	480	천	2,291	159		국(건설부)			
4	거창읍 중앙리	4-9	도	2,292	94		거창군			
5	거창읍 중앙리	2-6	도	2,153	79		거창군			
6	거창읍 중앙리	2-5	답	416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6길 46	강철우			

5.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시 문

거창군 고시 제 2015 - 82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가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주택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7월 01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성산마을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

2. 사업주체

가. 상 호 : 거 창 군

나. 대표자 : 거창군수

다. 영업소재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가.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8 외 15필지

나. 대지면적 : 17,155㎡

다. 규 모 : 주택용지 20필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7,155.0	100	
주택용지	5,223.5	30.4	
부대시설 용지	도로	3,757.2	21.9
	녹지	5,009.0	29.2
복리시설용지	3,165.3	18.5	

4. 사업시행기간 : 2015년 07월 01일 ~ 2015년 10월 30일

5. 붙 임 : 도로의 지정공고

도로의 지정 공고

아래 사항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1.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8번지 외 12필지
2. 대지면적 : 17,155.0m²
3. 도로지정면적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8번지 외 12필지 : 3,757.2m²
4. 승인번호 : 2015-도시건축과-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2

2015. 07. 01.

거창군수

※ 관계서류(도서는) 거창군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055-940-3605)에 비치합니다.

고시 제2015 - 8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7월 01일

거 창 군 수

신청인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장	주 소	진주시 초전북로 104(초전로)
하천명	당산천(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거창군 마리면 율리 680번지 외 13필지 일원	
	면 적	영구점용 : 1,491m ²	
	점용기간	2015년 07월 01일 ~ 영구	
	목 적 및 사 유	율리교 재가설 공사	

거창군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거창군 2014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4년도 거창군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① 총 건수	② 예고 대상				③ 예고 매체 (중복 표기)				④ 예고 기간	
	고시	훈령	예규	기타	관보 ·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기타	20일 이상	20일 미만
174	119	0	0	55	101	140	27	66	69	105

2015. 6. 29.

거창군수

비고: 이 공고서식은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임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우리군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운영사업 활용 등)함을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운영사업 활용 등)하고 매각 시 매각대금은 우리군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우리군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공 고 명 :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 공고
- 공고기간 : 2015. 7. 1 ~ 7. 15.
- 대상자전거 : 알톤자전거 등 3대
- 보관장소 : 거창군 공영자전거 그린씽 사무실
- 강제처분일 : 2015. 7. 15 이후
- 연 락 처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 055-940-3596】

2015. 7. 1.

거 창 군 수